

GAAP : 기업회계기준 브리핑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계약의 회계 이슈

I. 서론 – 에너지 전환과 BESS 계약의 확산

최근 에너지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공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BESS는 전력을 저장한 후 수요가 높은 시점에 방전함으로써 가격 변동성을 활용하는 구조를 가진다.

기업들은 직접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도 용량(capacity)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구조에 따라 다양한 회계 이슈를 발생시킨다.

II. BESS 계약의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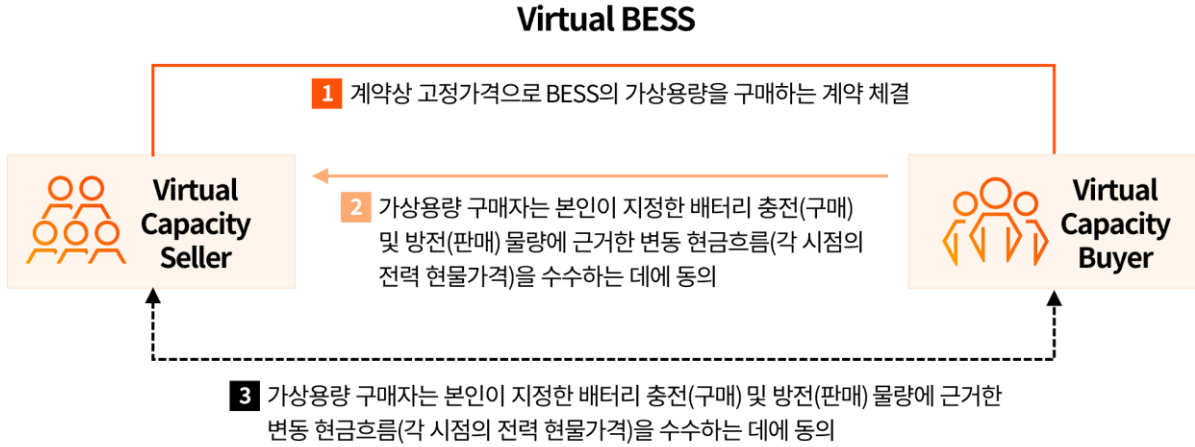
BESS 계약의 핵심은 전력 자체가 아니라 저장 용량에 대한 이용 권리이다. 배터리는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 저장 및 방출 기능을 수행하며, 경제적 효익도 저장 능력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적으로는 계약의 기초 항목이 저장 용량인지, 전력인지, 또는 금융적 가격 노출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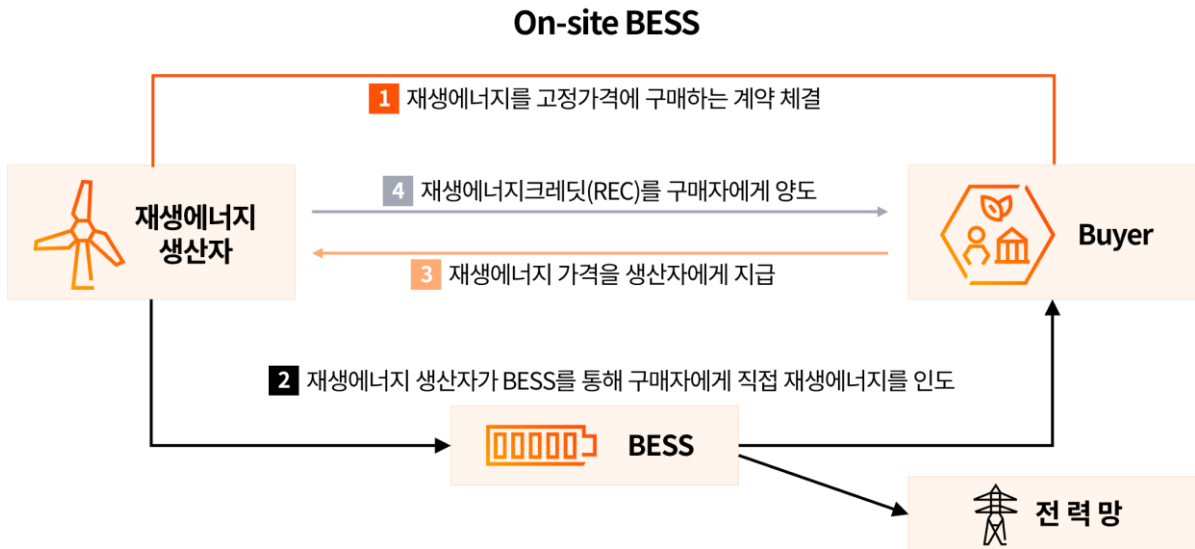
III. Physical vs Virtual 구분

가장 중요한 판단은 계약이 물리적 구조인지, 가상 구조인지이다.

Virtual BESS 계약은 특정 자산과 연결되지 않으며 주로 현금 순액정산 구조를 가진다. 이는 전형적인 금융상품으로 IFRS 9 적용 대상이다.



Physical BESS 계약은 실제 배터리 자산과 연결되며 저장 및 방전과 관련된 실물 흐름이 존재한다.



IV. 회계 판단 Framework

Physical BESS 계약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한다:

1) 연결 여부

BESS 계약이 특정 법인(SPV)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용량 구매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지배력(control), 공동지배(joint control) 또는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때 핵심 판단 요소는 의사결정 권한(power), 변동이익(variable returns)에 대한 노출, 그리고 해당 권한과 이익 간의 연계성이다.

특히 배터리의 운영 방식, 용량 배분, 전력 거래 전략 등에 대해 계약상 또는 사실상 지시권을 보유하는 경우 지배력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BESS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연결에 포함하거나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이는 단순 계약을 넘어 투자 구조로 재분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리스 여부

연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이 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이는 식별된 자산의 존재,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산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BESS 계약에서 식별된 자산은 전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특정 용량 단위로도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구조에 따라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또한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시점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통제하는지가 중요하며, 구매자가 해당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경우 자산 사용에 대한 통제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매자가 전체 용량이 아닌 일부 용량만 확보하고, 나머지 용량을 운영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한다고 보기 어려워 리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3) 자가사용면제 적용 여부 판단

리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이 IFRS 9의 '자가사용면제'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금융상품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때 계약이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예: 전력 소비 또는 저장 서비스 이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며, 단순히 가격 차이에 따른 정산 목적이라면 자가사용면제는 적용이 배제된다. 특히 계약이 순액정산(net settlement) 조건을 포함하고 있거나 실무적으로 현금 차액만 정산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BESS 계약의 기초 항목이 저장 용량이라는 비금융요소인지, 아니면 전력 가격에 대한 금융적 노출인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이후 회계처리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4) IFRS 9

자가사용면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FVTPL)한다.

특히 물리적 BESS 계약이라 하더라도 일부 용량만 확보하거나 저장 운영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이 파생상품과 유사한 구조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계약 조건에 가격연동, 옵션 요소 등 금융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의 존재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이 자가사용면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회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 인식 시 FVTPL 로 지정(designation)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V. 결론

BESS 계약은 리스, 서비스 계약, 금융상품 중 하나로 분류되며 이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계약 구조 분석은 거래 설계 단계부터 중요하다.